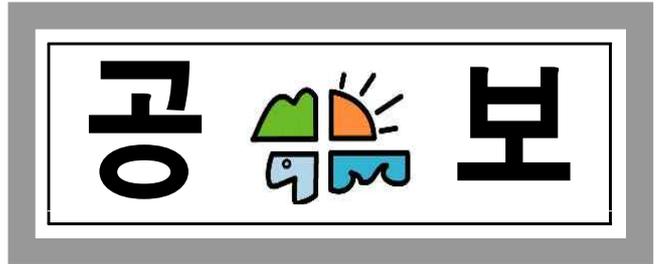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986호 2016년 4월 1일(목)

조 례

-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
-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4

규 칙

-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7
-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9

회 람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415, FAX : 639-2106)

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6년 4월 1일

속 초 시 장



속초시 조례 제 2460 호

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

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실·과·단장”을 “실·과장”으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실·과·단의 설치)”를 “(실·과의 설치)”로 하고, 제3조 중 “공원녹지과, 설악동재개발추진단을”을 “공원녹지과를”로 한다.

제8조제17호를 제22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6. 관광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
17. 설악동 관광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
18. 설악동 개발관련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
19. 설악동 개발관련 민외자 유치관련
20. 단체관광객 유치보상제 운영
21. 「자연공원법」 관련 업무

제21조를 삭제한다.

제24조제6호 중 “한·수해”를 “한해·수해”로 한다.

제25조제1항 중 “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”를 “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”로 한다.

제27조 중 “제9조”를 “제11조”로 하고,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다만,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 개정이유

한시기구인 “설악동재개발추진단”의 존속기한이 2016. 3. 31. 만료됨에 따라
기구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고, 보건소 기능 및 업무를 정하고 있는 「지역보건법」의
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6년 4월 1일

속 초 시 장

인

속초시 조례 제 2461 호

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

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570명”을 “573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559명”을 “562명”으로 한다.

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속초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관련)

1. 일반직공무원

구 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전문경력관
비 율	0.8% 이내	5.7% 이내	22.1% 이내	33.2% 이내	26.2% 이내	11.4% 이상	0.6% 이내

비고 :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2. 연구직·지도직공무원

구 분	연 구 직		지 도 직	
	연 구 관	연 구 사	지 도 관	지 도 사
비 율	0%	100%	12.5% 이내	87.5% 이상

비고 :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3. 별정직공무원

구 분	4급상당이상	5급상당	6급상당	7급상당	8급상당	9급상당
비 율			100% 이내			

비고 : 1.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.

2.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3]

속초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관련)

직급별 \ 기관별	총계	본청	의회사무기구	직속기관	사업소	동
총계	573	573				
정무직계	1	1				
시장(군수)	1	1				
일반직계	561	561				
2급						
3급						
4급	4	3		1		
5급	32	15	2	1	6	8
6급 이하 계	522	522				
전문경력관 소계	3	3				
별정직계	1	1				
2급 상당						
3급 상당						
4급 상당						
5급 상당						
6급 상당 이하 계	1	1				
연구직계	4	4				
연구원						
연구사	4	4				
지도직계	6	6				
지도관						
지도사	6	6				

◇ 개정이유

존속기한(“16. 3. 31)이 만료되는 한시기구 “설악동재개발추진단” 정원의 조정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분야의 전문경력관 직위를 확대하고,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 인력 증원 등 정원을 재조정하여 효율적 업무를 추진하고 함.

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6년 4월 1일

속 초 시 장

인

속초시 규칙 제 1349 호

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실·과·단장”을 “실·과장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실·과·단장”을 “실·과장”으로 한다.

제37조 및 제38조를 각각 삭제한다.

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하고, 별표 18은 삭제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분장사무 (제12조관련)

[부서명 : 관광과]

구분	
	관광특구 계획 · 추진
	관광진흥시책 수립
	관광사업체 관리
	설악-금강산 연계개발과 관광활성화 대책
	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
	온천원 보호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
	관광개발 종합계획 수립 조정
	관광지개발 기본계획 수립 · 추진
	지역축제 및 관광축제 행사 추진
	국제관광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
	관광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
	관광상품 개발 보급
	관광상품 광고매체 운영
	관광안내소 운영
	기타 관광안내체계 활동사업
	관광지 관리 및 운영위탁
	관광지 시설물 관리
	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
19	관광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
20	설악동 재정비·재개발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
21	설악동 개발관련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
22	설악동 환경정비·개선사업 추진 및 시설물관리
23	설악동 개발관련 민외자 유치추진
24	설악동 활성화 계획수립 및 추진, 지원
25	단체관광객 유치보상제 운영
26	「자연공원법」 관련 업무추진
27	온천휴양마을 조성사업
	그 밖에 타부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무

◇ 개정이유

한시기구인 “설악동재개발추진단” 의 존속기한이 2016. 3. 31. 만료됨에 따라
기구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6년 4월 1일

속 초 시 장

인

속초시 규칙 제 1350 호

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

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속초시 정원관리기관별, 직급·직렬별 공무원 정원표 (제2조관련)

직종·직급		직 렬	총계	본청	의 회 사 무 과	직속 기관	사 업 소	동
합 계			573	361	11	39	84	78
		정무직	1	1	-	-	-	-
		일반직	555	358	11	28	81	77
		별정직	1	1	-	-	-	-
		지도직	6	-	-	6	-	-
		일반직 또는 지도직	6	-	-	5	-	1
		연구사	4	1	-	-	3	-
	정무직	정 무 직	1	1	-	-	-	-
	별정직	소 계	1	1	-	-	-	-
	6급 상당	소 계	1	1	-	-	-	-
		비 서	1	1	-	-	-	-
	지도직	소 계	6	-	-	6	-	-
	5급 상당	농 촌 지 도 관	-	-	-	-	-	-

6급 상당	농촌지도사	6	-	-	6	-	-
4급	소 계	1	1	-	-	-	-
	국가서기관	-	-	-	-	-	-
	지방서기관	1	1	-	-	-	-
4~5급	소 계	3	2	-	1	-	-
	기술서기관· 보건사무관·의료기술 사무관· 간호사무관	1	-	-	1	-	-
	서기관·행정사무관	1	1	-	-	-	-
	서기관·행정사무관·사회복지사무관	1	1	-	-	-	-
5급	소 계	31	15	2	-	6	8
	행정	10	8	2	-	-	-
	녹지	-	-	-	-	-	-
	시설	2	2	-	-	-	-
	의무	-	-	-	-	-	-
	행정·시설	1	1	-	-	-	-
	행정·해양수산	1	1	-	-	-	-

	행정·사회복지	2	1	-	-	-	1
	행정·사회복지·시설	5	-	-	-	-	5
	행정·해양수산·사회복지	1	-	-	-	-	1
	행정·시설·공업	1	-	-	-	1	-
	행정·환경·시설	-	-	-	-	-	-
	행정·시설·환경·공업	2	-	-	-	2	-
	행정·농업·해양수산·시설	1	-	-	-	-	1
	행정·시설·녹지	-	-	-	-	-	-
	행정·시설·학예연구관	1	-	-	-	1	-
	행정·보건	-	-	-	-	-	-
	행정·시설·사서· 학예연구관	1	-	-	-	1	-
	시설· 녹지	1	1	-	-	-	-
	행정·시설·해양수산	1	-	-	-	1	-
	행정· 환경·시설·보건	1	1	-	-	-	-
6급	소 계	119	83	2	6	17	11

행정	35	26	2	-	6	1
녹지	1	1	-	-	-	-
보건	-	-	-	-	-	-
해양수산	2	2	-	-	-	-
시설	8	6	-	-	2	-
사회복지	1	1	-	-	-	-
전산	1	1	-	-	-	-
행정·해양수산	1	1	-	-	-	-
세무	3	3	-	-	-	-
행정·사회복지·세무	1	-	-	-	-	1
행정·사회복지	9	6	-	-	-	3
행정·보건	3	2	-	1	-	-
행정·공업	3	3	-	-	-	-
행정·환경	1	1	-	-	-	-
행정·환경·보건	2	1	-	-	1	-
행정·전산·방송통신						

	1	1	-	-	-	-
행정·시설	17	16	-	-	1	-
행정·녹지	1	1	-	-	-	-
행정·세무	8	4	-	-	-	4
환경·시설·공업	1	-	-	-	1	-
시설·해양수산	1	1	-	-	-	-
행정·사회복지·보건	-	-	-	-	-	-
행정·공업·환경	1	-	-	-	1	-
행정·공업·시설	-	-	-	-	-	-
보건·환경	-	-	-	-	-	-
보건·간호·의료기술·사회복지	1	-	-	1	-	-
행정·세무·공업	1	1	-	-	-	-
보건·간호·의료기술	3	-	-	3	-	-
행정·보건·간호·의료기술	1	-	-	1	-	-
공업·환경연구사·환경	1	-	-	-	1	-
환경·공업	1	-	-	-	1	-

	환경·공업·보건·행정	-	-	-	-	-	-
	행정·세무·시설	2	-	-	-	-	2
	환경연구사· 환경·행정·공업	1	-	-	-	1	
	행정·사서	1		-		1	
	행정·녹지·시설	1	1	-		-	
	통신운영	1	1	-	-	-	-
	전기운영	1	1	-	-	-	-
	운전	1	1		-	-	-
	화공운영	1	-		-	1	-
	사무운영·시설관리	1	1		-	-	-
7급	소 계	186	128	3	9	26	20
	행정	65	41	2	1	6	15
	농업	1	-	-	1	-	-
	녹지	1	1	-	-	-	-
	해양수산	3	3	-	-	-	-
	시설						

	10	9	-	-	1	-
방송통신	2	2	-	-	-	-
통신·행정·기록연구사	1	1	-	-	-	-
보건	1	-	-	1	-	-
세무	6	6	-	-	-	-
공업	5	2	-	-	3	-
간호	3	-	-	3	-	-
환경	2	2	-	-	-	-
의료기술	2	-	-	2	-	-
전산	2	2	-	-	-	-
사회복지	10	5	-	-	-	5
행정·시설	15	15	-	-	-	-
행정·세무	8	8	-	-	-	-
행정·녹지	2	2	-	-	-	-
행정·전산	-	-	-	-	-	-
농업·수의	1	-	-	1	-	-

해양수산·시설	1	1	-	-	-	-
환경·환경연구소	1	-	-	-	1	-
환경·시설·공업	1	-	-	-	1	-
공업·환경연구소	1	-	-	-	1	-
보건·환경	1	-	-	-	1	-
환경·공업	1				1	
행정·공업	2	2	-	-	-	-
공업·시설	1	1	-	-	-	-
사회복지·간호·보건	1	1	-	-	-	-
행정·사회복지	4	4	-		-	
행정·보건	2	2	-		-	
환경연구소· 보건· 공업	1		-		1	
행정·공업·시설	1		-		1	
행정·전산·사서	1		-		1	
행정·보건·식품위생	2	2				
방재안전·시설·공업						

		1	1				
	녹지· 시설	1	1	-		-	
	통신운영	2	2	-	-	-	-
	전화상담운영	1	1		-	-	-
	전기운영	2	1		-	1	-
	기계운영	2	-		-	2	-
	열관리운영	1	1		-	-	-
	운전	5	4		-	1	-
	화공운영	1	1		-	-	-
	사무운영·시설관리	9	4	1	-	4	-
8급	소 계	147	103	1	7	20	16
	행정	44	33	1	-	2	8
	녹지	-	-	-	-	-	-
	농업	2	-	-	2	-	-
	해양수산	1	1	-	-	-	-
	시설						

	6	6	-	-	-	-
공업	6	3	-	-	3	-
환경	1	1	-	-	-	-
보건	2	-	-	2	-	-
통신	-	-	-	-	-	-
간호	1	-	-	1	-	-
세무	8	8	-	-	-	-
의료기술	1	-	-	1	-	-
전산	3	3	-	-	-	-
사회복지	12	4	-	-	-	8
행정·녹지	1	1	-	-	-	-
행정·해양수산	1	1	-	-	-	-
행정·시설	8	7	-	-	1	-
행정·전산	1	1	-	-	-	-
행정·세무	5	5	-	-	-	-
행정·시설·녹지	1	1	-	-	-	-
사회복지·보건·간호						

	2	1	-	1	-	-
행정· 보건·식품위생	1	1	-	-	-	-
행정·환경·공업	1	-	-	-	1	-
해양수산·시설	1	1	-	-	-	-
행정· 시설·공업	1	1	-	-	-	-
시설· 공업	3	3	-	-	-	-
행정· 사회복지	4	4	-	-	-	-
행정· 보건	1	1	-	-	-	-
행정· 해양수산· 시설	3	3	-	-	-	-
행정· 방재안전·시설	1	1	-	-	-	-
환경· 공업	2	-	-	-	2	-
공업· 위생	1	-	-	-	1	-
행정· 사서	2	-	-	-	2	-
통신운영	1	1	-	-	-	-
전화상담운영	1	1	-	-	-	-
전기운영						

		4	1		-	3	-
	기계운영	1	1		-	-	-
	열관리운영	-	-		-	-	-
	운전	7	5		-	2	-
	위생	2	-		-	2	-
	사무운영·시설관리	3	2		-	1	-
	방재안전·사무운영·시설관리	1	1			-	
9급	소 계	65	23	3	5	12	22
	행정	3	2	-	-	-	1
	시설	-	-	-	-	-	-
	세무	-	-	-	-	-	-
	전산	-	-	-	-	-	-
	녹지	1	1	-	-	-	-
	사회복지	20	8	-	-	-	12
	공업	2	-	-	1	1	-
	행정·사회복지	1	1	-		-	

		방재안전· 행정·시설· 공업	1	1	-	-	-	-
		기계운영	4	-	-	-	4	-
		열관리운영	-	-	-	-	-	-
		운전	5	1	1	3	-	-
		속기· 사무운영· 시설관리	1	-	1	-	-	-
		사무운영· 시설관리	26	8	1	1	7	9
		전기운영· 열관리운영	1	1			-	
	전문경력관	소 계	3	3	-	-	-	-
	나군	체육지도사	1	1	-	-	-	-
	다군	사진촬영	1	1				
		무대기계	1	1				
	일반또는지도직	소 계	6	-	-	5	-	1
		농촌지도관· 농업사무관	1	-	-	1	-	-
		행정주사· 농촌지도사 · 농업주사	4	-	-	4	-	-
		농촌지도사· 농업주사	-	-	-	-	-	-
		행정주사· 농업주사						

			1	-	-	-	-	1
연구사	계		4	1	-	-	3	-
6 급 상 당	학예연구사		2	1	-	-	1	-
7 급 상 당	학예연구사		2	-	-	-	2	-

◇ 개정이유

존속기한(16. 3. 31)이 만료되는 한시기구 “설악동재개발추진단” 정원의 조정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분야의 전문경력관 직위를 확대하고,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 인력 증원 등 정원을 재조정하여 효율적 업무를 추진하고 함.